

#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

문서번호 :

수 신 :

계약번호		가입한도	
계약기간			
차량번호		피보험자	
사고장소			
사고일시		운전자	
피해물		피해자	

상기 자동차는 관계법 및 보험계약에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에서 정한 취지와 같이 보험약관의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인 : (인)

주민번호 :

주 소 :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

상기 사실을 증명함.

문서번호 :

단, 이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확인될 사실에 의하여 관계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증명서는 무효임

상기 사고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이거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300만원, 대물배상 보험금 100만원은 당사의 보상책임이 없습니다. 단,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대물배상 1천만원, 대인배상에만 적용되고 대인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음.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